



### 3. 사업개요

○의무부담액

구 분	추정사업비 합 계	국 비 (70%)	기 금 (25.5%)	지방비의무부담 (4.5%)	비 고
재원별	52,174 백만원	36,522 백만원	13,304 백만원	2,348 백만원	

※ 민간사업자와 협상과정에서 이자율, 운영비등 발생에 따른 지방비 의무부담총액 증가가능

○채 권 자 : 사업시행자 (민간투자 사업자)

○채 무 자 : 제 천 시

○상환방법 :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사업이 완공된 익년부터 민간사업자에게 국고 및 지방비 분담비율로 20년간 원리금을 상환

### 4.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홍완식)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1항제8호에 의거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4조, 제25조, 제26조에 의거 하수도등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동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리시는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관련하여 1단계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하는 용두천, 고암천, 하소천 분구 88km에 대한 총사업비 75,678백만원에 대하여 2006년도에 지방비 3,300백만원 부담을 동의한바 있으며
- 금회 동의안은 2단계 사업으로서 환경부로부터(생활하수과-2205호, 2008. 10. 22) '09년도 하수관거정비 BTL 대상지역 및 한도액 결정통보를 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52,174백만원중 지방비의무부담비 2,348백만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임.
- 위 사업은 국고보조율이 70%인 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및 운영비 지원비율이 2007년 12월 18일자로 변경되어 지방비의 85%를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15%를 지방비로 부담하여 총사업비중 4.5%인 2,348백만원을 지방비로 부담하는 사업임.
- BTL 사업시행시 장기간에 걸쳐 시행해야 할 하수관거 사업을 단기간에 완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사업계획이 완료(2013년)된 때부터 20년간 매년 원리금 상환을 위한 시비를 확보하여야 함.
- 따라서 1단계 사업을 포함한 시비부담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상환 재원조달에 대한 검토와 사업의 시급성과 추진효과, 사업완료후의 유지보수비 및 운영방안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4. 질의답변 요지(답변자 :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 BTL사업과 관련하여 1단계 사업이 착공하지 못한 사유는?(성명중위원)  
: BTL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인데 정식법인이 설립이 못하였는데, 정식법인이 안된사유는 교보생명하고 사업시행자하고 대출약정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대출약정이 미책정되어서 정식법인이 안되었으며 그로 인해서 실시계획 절차를 못이행하고 있음. 1월 29일까지는 대출약정을 정식법인이 설립된 후에 교보생명하고 사업시행 주관회사하고 정식 대출약정을 체결할 계획임.

- 지방비 의무부담이 4.5%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자율이나 운영비는 변동이 많은 것인지?(성명중위원)
  - : BTL사업의 상환금은 총 투자비, 물가변동, 건설이자, 운영비 등으로 이루어 지는데 협상과정이나 물가변동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음.
- 2단계 BTL사업도 지역업체에 40%지분을 줄 수 있는 것인지?(성명중위원)
  - :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지역 업체도 완벽하게 참여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게 환경관리공단과 우리시가 위탁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게 하고자 하며, 아울러 지역업체도 참여하는 방법도 강구하고자 함.
- 우리시의 BTL사업을 보면 단일구역이고 하수종말처리장도 하나이기 때문에 2단계 BTL사업도 기존 업체에 유리한 것인지?(성명중위원)
  - : 피큐라는 제도가 있는데 피큐제도 내용이 많은 경험을 쌓았거나 실력이 있는 회사가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입찰 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음.
- 국비와 지방비로 20년 원리로 상환하는데 원리금 상환할 때도 국비 70%, 기금 25.5%, 지방비 4.5% 부담하는 것인지?(성명중위원)
  - : 그 비율에 의해서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어 있음.
- 사업선정 과정에서 위탁수수료를 2단계 BTL사업 선정할 때도 위탁수수료를 직접 공사비에 포함해서 예산을 절감할수 있는지?(성명중 위원)
  - : 알겠음.
- 하수관거 정비사업 1단계사업과 2단계사업이 2013년도에 완료되면 우리시 관내에 하수관거정비사항은 완료가 되는 것인지?(조덕희 위원)
  - : 우리시는 동지역하고 읍면지역으로 나뉘지는데 우리가 90%정도 되어 있는 동지역에 대해서는 우수와 하수가 완전히 분류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까지도 사업을 시행한 BTL사업 시행자가 20년동안 관리를 해 나가는 것임.

## 5. 소수의견

“없 음”

## 6. 토론요지

“없 음”

##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 8. 심사보고 붙임서류

'09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지방비 의무부담 동의안 1부.